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3387
----------	------

제안년월일 : 2025년 12월 18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5년 8월 11일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51호)과 2025년 10월 20일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72호) 및 같은 날 성흠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49호)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관광약자의 실질적 관광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관광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연계 시킬 필요가 있으며,
- 서울시는 관광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약자의 관광접근성 향상과 시행 사업의 정기평가 및 결과 공개 등 현행 조례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광복지 향상과 포용적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관광진흥법」 상 관광 활동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가 추가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다자녀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 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관광약자에 다자녀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 나. 관광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다. 관광지원기본계획에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6호).
- 라. 관광활동지원 대상을 관광약자로 확대함(안 제5조).
- 마. 시장 및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함(안 제5조제3항).
- 바. 관광약자의 실질적인 관광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무장애 관광지 · 관광 상품 · 관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 사. 시장으로 하여금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함(안 제9조).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임신”을 “임신, 다자녀(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접근성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제목 “(장애인 관광활동지원)”을 “(관광약자 관광활동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을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의 여행”을 “관광약자의 여행”으로, “장애인의 관광”을 “관광약자의 관광”으로, “장애인 관광”을 “관광약자 관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적극 발굴

하고, 관련 정보 제공과 원활한 접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실적평가 및 보고) 시장은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u>임신</u>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 <p><u><신 설></u></p> <p>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 략) <p><u><신 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생 략) ② (생 략) <p>제5조(<u>장애인 관광활동지원</u>)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p>	<p>제2조(정의)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p>----- <u>임신, 다자녀(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u>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현행과 같음) 4. <u>“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u> <p>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 ① -----</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현행과 같음) 6. <u>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접근성에 관한 사항</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p>제5조(<u>관광약자 관광활동지원</u>) ① ----- <u>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u></p>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생략)

<신 설>

<신 설>

제9조 (생 략)

를 제공하고, -----

-----.

② ----- 관광약자의 여행 -----

-- 관광약자의 관광 -----
관광약자 관광 -----

-----.

③ 시장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정보 제공과 원활한 접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평가 및 보고) 시장은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